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통관 절차**란 관세행정기관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나. **운송수단**이란 자연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

제4.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 라. 관세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 세계 및 역내 공급망을 위한 강화된 환경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제4.3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각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제4.4조

일관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그 당사국의 지역 세관 간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4.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 절차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라. 통관 목적상 생산품의 품목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규칙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바. 수입, 수출이나 통과 제한 또는 금지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자. 자국이 당사자인,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차. 관세할당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2. 특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갱신한다.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자국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에 관한 설명¹

¹ 각 당사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

나.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를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그리고

다. 제4.6조에 규정된 대로 관세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문의처의 연락처

3. 가능한 한도에서, 새로운 관세법 및 규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제안된 관세법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사전 공고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문의처

각 관세행정기관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문의에 답변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한다.

제4.7조

통관 절차

1. 각 관세행정기관은 자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으로 허용되는 한도에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3. 관세행정기관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관 절차를 검토한다.

제4.8조 선적전검사

1.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선적전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그 이용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3. 제2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적전검사를 지칭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상 선적전검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4.9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다.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2. 당사국은 신청인이 그 당사국에서 법적 대리 또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요구는 중소기업의 특정한 수요를 특히 고려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인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지 않는다.^{2, 3}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절차

나. 각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상품의 견본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언제라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밖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그리고

라. 사전심사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4. 각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접수 시 90일 내에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5.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상황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6. 당사국은 제3항나호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된 추가 정보가 합리적이고 명시된 기

²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통하여 이 항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³ 각 당사국은 자국의 등록 절차가 투명하고, 신청이 시의적절하게 고려되며, 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알려지도록 보장한다.

간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추가 정보의 요청 당시 결정되고 그 당사국은 추가 정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7.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년으로 정한다.

8.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가. 자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라.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9.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사전심사결정이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10. 각 당사국은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이 그 밖의 이해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0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 항은 반출을 위한

당사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에게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상품의 경우, 그러한 검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며, 과도한 지체 없이 행해지고 완료된다.

4. 각 당사국은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정 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당사국은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보증을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5.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통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업무 시간 외

6. 각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를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이 승인 또는 지정하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

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4.11조

위험관리

1. 각 당사국은 통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 접근방식과 기술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3. 각 당사국은 통관 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탁송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을 신속화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탁송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의 성격 및 상품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격,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기술에 대한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제4.12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하고, 이는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4.13조

반출 시간 연구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가 발행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 측정 지침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권장된다.

가. 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기회에 대한 고려

2. 각 당사국은 사용된 방법과 식별된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1항에 언급된 반출 시간 연구에서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4.1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행정 결정⁴을 내리는 모든 인이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보다 높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행정 당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그에 의한 재심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2.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4.15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15조

비밀유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4.16조

관세협력

⁴ 이 조의 목적상, “행정 결정”이란 개별 사례에서 특정한 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말한다. 이 조에서 언급된 행정 결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의미에서의 행정 행위 또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법적 체계에 규정된 대로 행정 행위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관세행정기관이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지시하기 위한 대안적 행정 메커니즘이나 사법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마.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바. 자유무역협정 이행 통계,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형식 및 종류의 교환,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행정적 변경, 법이나 규정의 수정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과 관련된 유사한 조치에 대한 시의적절한 통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 통지는 영어나 그 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고, 제4.17조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에 제공될 것이다.

제4.17조

협의 및 접촉선

1.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이행 또는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요청당사국이 제공한 합리적인 근거 또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이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그 사안을 제4.18조에 언급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에 대한 정보는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되고 해당 정보의 모든 변경은 신속하게 통보된다.

제4.18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지정한 대표⁵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대하여 검토, 논의, 제안 및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

- 1)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그리고 이 장들과 관련된 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이 장들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그리고

⁵ 한국의 경우, 대표는 한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원산지 규정 대표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대표가 공동 대표가 된다.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 라 한다) 전환에 근거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나.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한 다른 사안을 다루는 것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